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2,400,000	15,972,000
일반회계	476,671,617	14,300,149
특별회계	55,728,383	1,671,851
공기업특별회계	25,394,039	761,82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394,039	761,821
기타특별회계	30,334,344	910,030
주택사업특별회계	12,100	363
의료보호특별회계	353,238	10,59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40,000	46,2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	3,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74,564	29,237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74,055	38,222
수질개선특별회계	25,360,387	760,81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720,000	21,6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조서]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27,54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